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7
------	------

2025.04.2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0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4.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가. 제안이유

- 시 전체 규제 조정을 총괄하고 규제개혁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불편·불합리한 규제의 집중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조직 신설 및 사무분장 명시

- (기획조정실) 규제 조정 및 개혁 총괄을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3급)」을 신설하고, ‘규제 평가·개선 등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사무 분장으로 명시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도시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자 제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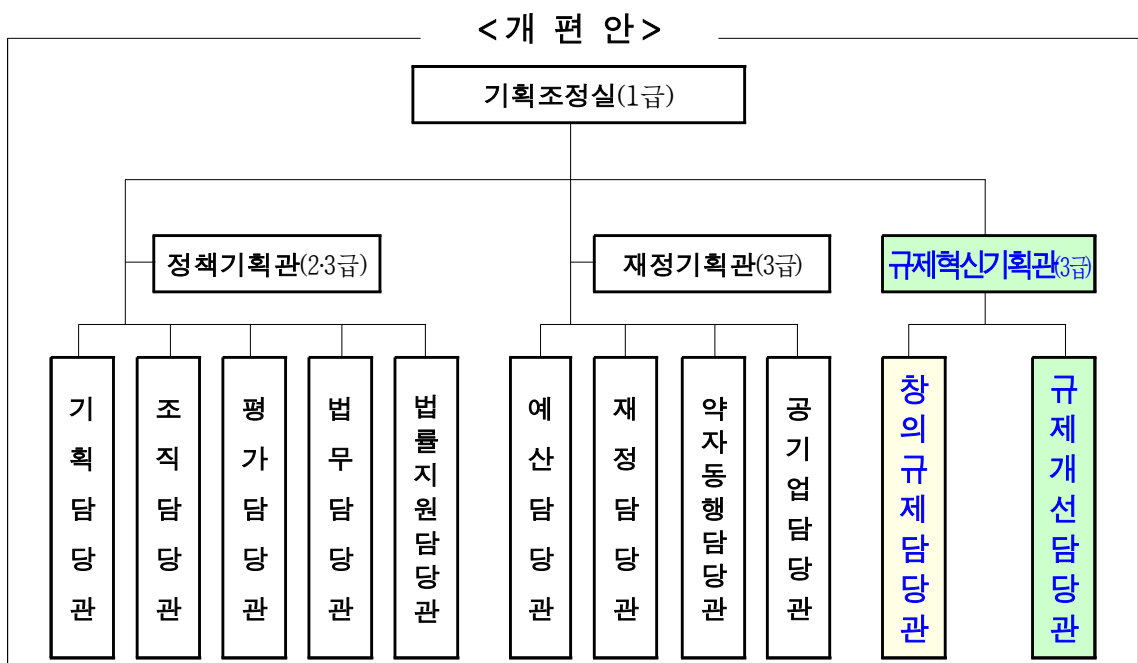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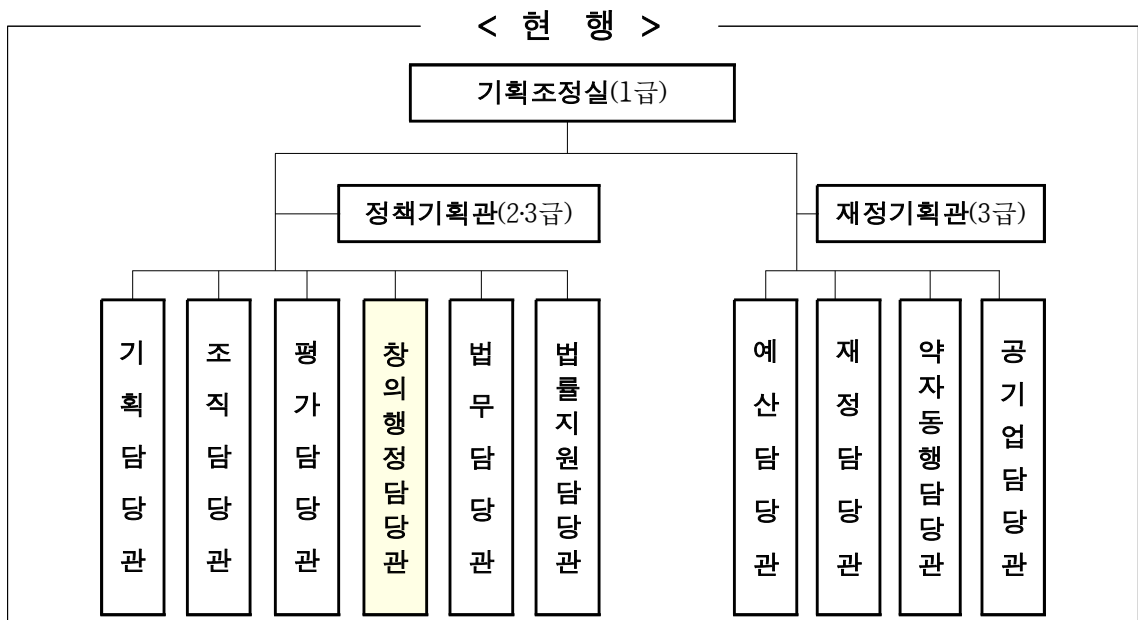
2. 규제혁신기획관의 신설 경위 및 기능

- 서울시는 제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촉발된 각국 간의 관세전쟁 여파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등 국내외적 경기침체 요인으로 인해 수출과 국내소비에 어려움이 예견되자 시장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하였음.
- 이후 서울시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2025.1.14.)하고, 서울시정에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와 ‘규제철폐 100일’을 운영(2025.1.3. ~ 4.12)하여 123건(4.12.기준)에 이르는 규제철폐안을 발표하였음.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러한 규제철폐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에 규제철폐 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기획조정실 내에 3급 상당의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신설되는 규제혁신기획관에는 창의행정담당관의 업무와 법무담당관에서 담당하던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업무를 이관받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개선-관리에 이르는 규제개혁 업무의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민간 및

정부·국회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을 위촉·운영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은 현행 1실 2관 10담당관에서 1실 3관 11담당관으로 조직규모가 확대됨(+1관 +1담당관).

< 조직 개편(안) >



3. 조직개편의 적정성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기획조정실에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면서 그 소속으로 창의규제담당관과 규제개선담당관이라는 명칭의 과 단위(4급) 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¹⁾ (이하 “지방기구정원 규정”)은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으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의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있음.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 본다면,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의 법무담당관에서 수행하던 규제개혁 관련 사무와 신설 사무인 규제총괄관 운영, 규제철폐 100일을 통해 제시된 제안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서울시 전 부서 및 시민 대상의 규제철폐 관련 사무를 상시화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의 독자성은

1)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행정기구를 설치, 개·폐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함.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정부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외에 2022년 8월부터 국무조정실에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차원의 규제혁신 사무를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실질적으로 규제의 존폐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률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으로 서울시의 사정이나 노력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고, 한정적인 규제 중에서 개선 사항을 발굴·처리한다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 기구보다는 한시기구 수준의 사무량과 지속성이 예상된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최근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명분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활시켰던 사례 등을 참고하면 재산권과 민생 분야에 직결된 규제의 존폐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장급 공무원인 규제혁신기획관과 민간인이면서도 3급 수준의 대우를 받을 예정인 규제총괄관 간의 권한 배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방기구정원 규정에 따르면 국 단위 기구의 설치는 일반요건으로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의 하부조직 구성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신설되는 규제혁신기획관은 그 소속으로 2개 과만을 설치하고 있어 국 단위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 ⑧ (생략)

- 다만 지방기구정원 규정은 과 단위 조직에 대하여 5급 4명을 포함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는 창의규제담당관과 규제개선담당관을 각각 3개의 팀 단위로 구성할 예정으로, 동 규정이 제시하고 있는 과 단위 조직의 설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부서의 명칭은 해당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일반시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하나 창의규제담당관은 ‘창의’와 ‘규제’라는 상반되는 용어를 포괄하는 부서명칭으로 인해 어떠한 기능과 업무를 하는지 손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²⁾.
- 한편 지방기구정원 규정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실·국의 수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된 정책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은 별도의 국 단위 보조기관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기획조정실장의 보좌기관으로 설치되었음.
- 그러나 실·국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동 규정이 개정(2024.03.29.)됨에 따라 규제혁신기획관은 국 단위 보조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인 바, 향후 추가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기관 중에서 실제로는 보조

2) 서울시는 그동안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등을 통해 “창의행정”과 “규제철폐”를 동의·유사 개념으로 활용해 왔음.

기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보좌기관으로 설치된 기구들은 일괄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37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 전체 규제 조정을 총괄하고 규제개혁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불편·불합리한 규제의 집중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및 사무분장 명시
- (기획조정실) 규제 조정 및 개혁 총괄을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3급)」을
신설하고, ‘규제 평가·개선 등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사무분장으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별표2(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5. 3. 13. ~ 3. 25.) 결과: 의견제출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실”을 “기획조정실 밑에 규제혁신기획관을, 경제실”로 한다.

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규제 발굴·평가·개선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본부·국의 설치) ①· ② (생 략) ③ <u>경제실</u> 밑에 경제일자리기획 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고독정 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 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 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기획 관을 둔다.	제4조(설·본부·국의 설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획조정실</u> 밑에 <u>규제혁신기 획관을, 경제실 -----</u> ----- ----- ----- ----- ----- -----.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제5조(기획조정실)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규제 발굴·평가·개선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u>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구 개편 및 소관 사무 조정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본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 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